

## 입출금 은행이체 약관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은행을 통한 입.출금이체거래(이하 "이체거래"라 한다)에 있어서 위탁자와 유선투자선물㈜(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휴은행"이라 함은 회사가 이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
2. "이체입금"이라 함은 위탁자가 제휴은행에서 무통장 입금표를 통하여 회사의 위탁자용 은행입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체출금"이라 함은 위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의 위탁자용 은행입금계좌로부터 과생상품계좌개설신청서상의 은행이체출금지정계좌(이하 "출금지정계좌"라 한다)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이체입금)

- ①회사의 제휴은행을 통한 회사(은행입금계좌)로의 이체입금은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하되, 제휴은행 이외의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반드시 현금처리한 후 입금한다.
- ②사고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사전에 지정한 은행입금계좌외의 타계좌로는 이체입금하지 아니한다

### 제4조 (이체입금의 확인)

위탁자는 제휴은행을 통해 회사(은행입금계좌)로 이체입금한 경우 회사에 입금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회사에 입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금에 관한 사항이 명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금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5조 (이체출금)

- ①위탁자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사에 이체출금을 신청한 때에는 출금전표에 본인의 날인없이 출금하고 별도의 통지없이 이체절차에 따라 사전에 위탁자가 지정한 출금지정계좌로 입금처리함에 동의한다.
- ②회사는 위탁자 재산보호를 위하여 위탁자가 사전에 지정한 출금지정계좌외의 타계좌로는 이체출금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 (본인확인)

제휴은행을 통한 이체입.출금시 위탁자는 회사가 위탁자 본인확인을 계좌명, 계좌번호, 비밀번호로 확인하는데 동의한다.

### 제7조 (이체출금지정계좌의 설정)

위탁자는 서면에 의하여 사전에 제휴은행을 통한 이체출금을 위하여 위탁자 본인의 계좌를 2개 이내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은행계좌의 명의인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위탁자계좌의 명의인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 제8조 (이체입.출금 신청시간)

당일의 이체입.출금신청은 제휴은행 업무종료시간(평일 16시00분) 이전에만 가능하며, 연장시간(평일 16시00분 이후)에 이체입금 처리된 경우에는 익일 입금으로 간주한다. 단, 회사는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5조에 의한 휴장일에는 입출금 업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 (이체출금의 취소)

위탁자의 출금지정계좌가 폐쇄된 경우, 명의 변경된 경우 또는 최고예금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출금요청은 위탁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위탁자의 연락처로 당해 사실을 통지한다.

### 제10조 (면책사항)

①위탁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 및 회사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전산장애, 회선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위탁자는 이체거래 계좌의 비밀번호 등의 기밀사항이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타인에게 누설되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1조 (은행계좌사항)

위탁자의 출금지정계좌에 명의변경, 통장분실, 인감분실,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의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당해 출금지정계좌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 제12조 (자동해지)

과생상품거래계좌가 폐쇄된 때에는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 제13조 (수수료 부담)

이체입금 또는 이체출금시 송금수수료 또는 은행간 타행환 이체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는 위탁자가 이를 부담한다..

### 제14조(전화 등의 녹음)

위탁자와 회사는 입.출금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동의한다.

제15조 (약관변경 통지) ①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 내용을 1개월간 게시하고,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 2항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기타사항)

이 약관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약관은 199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